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소관 : 혁신행정담당관]

제 정	1979. 6. 1	훈령 제 26호
전문개정	1981. 6.18	훈령 제 44호
전문개정	1991. 5.25	훈령 제157호
전문개정	1994. 9.14	훈령 제198호
전문개정	2000. 2. 2	훈령 제303호
전부개정	2005. 4.26	훈령 제414호
일부개정	2005.12. 8	훈령 제434호
일부개정	2006. 2.20	훈령 제450호
전부개정	2006. 6. 1	훈령 제462호
일부개정	2007. 5.10	훈령 제501호
일부개정	2007. 8. 1	훈령 제508호
일부개정	2008. 1.30	훈령 제534호
전부개정	2008. 4.11	훈령 제545호
전부개정	2008. 9.29	훈령 제578호
전부개정	2009. 9.11	훈령 제623호
일부개정	2009.12.10	훈령 제645호
일부개정	2011. 8.10	훈령 제698호
일부개정	2012. 1.31	훈령 제710호
전부개정	2013.12.19	훈령 제753호
일부개정	2015. 4. 1	훈령 제810호
일부개정	2016. 4. 1	훈령 제840호
일부개정	2017. 5. 2	훈령 제871호
일부개정	2019.12.27	훈령 제96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의사항) ①정책·기획에 관한 사항과 차장이상의 결재사항 중 주

요사항은 기획조정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중요한 지시사항은 산업재산정책국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2이상의 국 또는 과(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국 또는 과(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특허심판원장·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체 사무분장규정을 훈령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직속기구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특허시책과 그 업무의 홍보 및 보도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언론기관과의 보도에 관한 협조
5. 보도자료의 분석 보고
6. 보도사진의 촬영·수집·배포 및 게시
7. 청·차장 등의 대언론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간행물, 영화, 비디오, 사진 기타 공보관계 자료의 수집·제작·발간 및 배포에 관한 통제조정
10.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특허사업화담당관)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원된 특허 중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이하 “혁신특허”라 한다)의 발굴 및 사업화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3.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에 관한 제도 연구 및 실태조사
5.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산업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제6조의3(아이디어거래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이디어 거래(소비자가 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업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소비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의 총괄
2.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3.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의 구축·운영
4. 산업재산권 등록마크를 활용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아이디어 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6. 아이디어 거래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 연구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4. 사정 및 공직기강 관련업무의 처리
5.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
6. 소극행정 관련 민원의 처리

7. 민원사무 처리 실태의 감사
8.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업무의 처리
9.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0.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심사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심사품질 업무의 기획, 진단 및 분석
3. 심사평가규정에 관한 사항
4. 심사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5. 심사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심사평가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9. 기타 심사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업무
 - 가. 공무원의 임용 관련 업무(신규채용·승진·전보·전출입·면직 등)
 - 나. 보수제도
 - 다. 인사제도 관련 업무(각종 법령, 예규, 지침관리)
 - 라. 신원조사 및 제증명 발급 업무
2. 서무업무
 - 가.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
 - 나. 문서의 분류·통제
 - 다. 각종 행사 및 회의실 운영

라. 직원아파트 운영

마. 청사관리·사무실배치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

바. 당직관련 업무

사. 기타 청내의 일반서무와 다른 국·관 및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교육·복무 관련 업무

가. 직원의 복무

나.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다. 공무원증 발급

라. 정부포상 및 자체 상훈관리 업무

마. 국비해외 훈련,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 등

4.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지출

나. 봉급·연금·기여금 징수불입 및 대부에 관한 사무

다. 세입징수사무

라.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무

마.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

바. 세입세출 결산

사. 자금공급

아. 의료보험업무

자. 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

5. 용도업무

가. 세출예산 집행

나.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다. 국유재산의 관리(국유특허권 제외)

라.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

- 마.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 바. 차량관리 정수 및 관리운영
- 사. 물품(비품) 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6. 비상계획업무

- 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나. 정부 비상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실시
- 다. 자체방호 태세 및 비상통신망의 점검
- 라. 방화 및 안전관리
- 마. 직장예비군의 운영 관리
- 바.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관리
- 사. 보안업무
 - 아. 공익요원 관리
 - 자. 직원 차량 출입증 발급
 - 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제3장 기획조정관

제10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조정 및 관리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6. 재정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
8.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및 관리
8. 자체제안제도의 총괄·운영
9.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0. 행정능률 관리
11.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2. 청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제12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0.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운영
11.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 관리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13. 삭제
14.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15.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7.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4장 산업재산정책국

제13조(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및 제도연구
5.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6.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 관련 업무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8. 삭제
9. 삭제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특허공제사업의 관리·운영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
2.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및 활용 촉진
4.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활성화
5.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의 지원
7.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8.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산업재산인력과)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시행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연구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분석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8.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활용·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지역산업재산과)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2.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5.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6의2.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6의3.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6의4. 발명인의 전당 운영

7. 그 밖에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산업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3. 산·학·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4. 표준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5.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 기반 조성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관리·감독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제5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제18조(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 및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4.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운영
5.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분석 및 제도 조사·연구
7. 부정경쟁행위 방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 7의2. 산업재산권 표시 관련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2. 산업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 및 대응 지원
4. 삭제
5.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6.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7.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산업재산조사과) 산업재산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단속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계획의 수립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4.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권 수행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5. 삭제

제21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3. 삭제
4. 주요국의 산업재산권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산업재산권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6. 산업재산권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7.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8. 해외 산업재산권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
9. 삭제
10. 선진 5개국 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추진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다자기구팀) 다자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4.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7.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삭제
9. 삭제
10.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11.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6장 정보고객지원국

제23조(정보고객정책과)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3.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4.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5.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6.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7.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8.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운영
9.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1.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3.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조정
1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5.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16.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해외 확산
17. 산업재산권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조정
18.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
1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21.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2.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 조사·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8.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9.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0.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11.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12.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13.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15. 내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7. 산업재산권 출원서류·등록서류 및 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
의 운영
18. 전통지식 DB 구축·활용을 통한 신지식재산권 창출정책의 수립·추진
19.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5. 삭제
6.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발간 및 배포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 발간 및 배포
9.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급
10.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2. 외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 삭제

제27조(출원과)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 방식심사
2.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서 방식심사
3. 특허·실용신안출원의 심사청구서 방식심사
4. 출원서, 중간서류 방식심사 중 흠결이 없는 서류의 수리

5. 심사청구기간만료예고 통지
6.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7. 출원에 관한 지정기간 연장 승인
8. 출원에 관한 보정통지
9. 출원에 관한 반려이유 안내
10. 출원서류의 반려
11. 출원의 무효처분
12. 출원취하·포기의 수리
13. 우선심사신청서 방식심사
14. 출원인 정보변경신청서 방식심사
15. 기타 중간서류 방식심사
16. 서면 접수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출원서류 관리
17. 서면 출원된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중간서류 관리
18. 서면접수서류에 관한 전자화 자료정리 및 이관
19. 방식심사 제도·절차의 개선
20.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21.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서류의 접수
22. 특허협력조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23.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 및 정보제출서의 접수
24. 출원 및 등록관련 서류의 복사, 등·초본의 교부 그 밖의 각종 증명의 발급
25. 출원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 및 정보변경 업무
26. 방문 제출한 산업재산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의 접수
27. 방문 제출한 실시권·사용권·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신청서의 접수

28. 기타 국내출원에 관한 사항

제28조(등록과)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 및 부령의 제·개정
2.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전
3.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5.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6.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7.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8.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9.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0.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1. 이의신청·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2. 촉탁에 의한 등록
13.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29조(국제출원과)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삭제
7.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 9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 9의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0.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1.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제7장 상표디자인심사국

제30조(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2. 상표·디자인의 심사처리계획 수립·조정 총괄
3.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 운영·연구(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상표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상표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6. 상표법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상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8. 상표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운영
10. 상표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상표관련 민원사무 처리
12. 국내 다른 과·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13. 상품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4. 상품분류, 도형분류, 국제상품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
15. 상표조사분석사업 및 국제상표출원 DB구축사업의 관리
16. 상표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
17. 상표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8. 상표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상표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상표·국제상표 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2. 디자인의 심사처리계획 수립
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운영·연구(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디자인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6. 디자인보호법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자인출원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
11. 디자인 이의신청제도 운영
12. 디자인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디자인관련 민원사무처리
14. 디자인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5. 디자인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

16. 디자인조사분석사업의 관리 및 디자인(공지디자인을 포함한다)심사자료의 정비

17. 디자인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

18. 디자인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9. 디자인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디자인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디자인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생활용품상표심사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11류, 14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18류, 제20류, 제21류, 제22류, 제23류, 제24류, 제25류, 제26류, 제27류, 제31류, 제34류 및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증명표장(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 및 이들 상표등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5.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6. 제1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7.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3조(화학식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29류, 제30류, 제32류, 제33류 및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 및 이들 상표등록출원, 소리·냄새 등 특수상표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삭제
3.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7. 제1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4조(서비스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35류 내지 제4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삭제
3.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7.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5조(기계전자상표심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6류, 제7류, 제8류, 제9류, 제10류, 제12류, 제13류, 제19류, 제28류 및 제

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 업무표장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3. 제1호의 지정상품 및 지정업무와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7.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의 시장조사
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6조(국제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3. 제1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4.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제37조(생활디자인심사과)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분류표중 A군(제조식품 및 기호품), B군(신변품 등), C군(생활용품), D군(주택설비용품 중 D4·D5 제외), E군(취미, 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F군(사무용품), N군(글자체)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2.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3.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삭제
5. 삭제
6. 제1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8조(산업디자인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분류표중 D군(주택설비용품중 D4·D5), F군(판매용품), G군(운수 또는 운반기계), H군(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J군(일반기계기구), K군(산업용기계기구), L군(토목건축용품), M군(그밖의 기초제품)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3.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4.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5. 삭제
6.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
7. 제1호, 제6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8장 특허심사기획국

제39조(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3.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4.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 특허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6. 국방 관련 비밀출원에 관한 사항
7. 심사관 승급제도 및 심사관보제도의 운영
8. 외부 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10.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11.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제도의 운영·연구
 - 11의 2. 심사부서별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 관리·조정
12.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내 다른 과·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14. 특허심사기획국·융복합기술심사국·전기통신기술심사국·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15. 삭제
16. 기타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특허심사제도과) 특허심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조정과 심사지침서·업무편람의 발간
3.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4. 특허·실용신안 심사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
5.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협력에 관한 사항
6.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9. 그 밖에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41조(생활용품심사과) 생활용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2조(식품생물자원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식품생물자원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3조(주거기반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주거기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4조(가전제품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가전제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5조 삭제

제46조(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 제47조(국제특허출원심사2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9장 융복합기술심사국

제48조(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9조(사물인터넷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사물인터넷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0조(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1조(지능형로봇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지능형로봇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2조(자율주행심사팀) 자율주행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3조(스마트제조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스마트제조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0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

제54조(전기심사과) 전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전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5조(컴퓨터심사과) 컴퓨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컴퓨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6조(반도체심사과) 반도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7조(통신심사과) 통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통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삭제
5. 삭제

제58조(디스플레이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디스플레이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9조(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

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0조(전자부품심사팀) 전자부품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전자부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1조(방송미디어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방송미디어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1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

제62조(유기화학심사과) 유기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유기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3조(약품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약품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4조(기초재료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기초재료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4조의2 삭제

제65조(차세대에너지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차세대에너지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6조(고분자섬유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고분자섬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7조(의료기술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기술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8조(환경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환경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2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

제69조(일반기계심사과) 일반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일반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0조(제어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제어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1조(건설기술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2조(자동차심사과) 자동차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자동차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3조(동력기술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동력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4조(운송기계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운송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5조(계측기술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계측기술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6조(재료금속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재료금속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별표 1]

심사부서별 특허분류표(IPC, CPC)

□ 특허심사기획국

부서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생활용품심사과	A41G, A42B, A42C, A43B, A43C, A44B, A44C, A45B, A45C, A45D, A45F, A47B, A47C, A47D, A47F, A47H, A47K, A63B, A63C, A63D, A63F, A63G, A63H, A63J, A63K, B68B, B68C, B68F, B68G, G10K(11/00 - 11/36)	A41G, A42B, A42C, A43B, A43C, A44B, A44C, A45B, A45C, A45D, A45F, A47B, A47C, A47D, A47F, A47H, A47K, A63B, A63C, A63D, A63F, A63G, A63H, A63J, A63K, B68B, B68C, B68F, B68G, G10K(11/00 - 11/36)
식품생물자원심사과	A01B, A01C, A01D, A01F, A01G, A01H, A01J, A01K, A01L, A01M, A21B, A21C, A21D, A22B, A22C, A23B, A23C, A23D, A23F, A23G, A23J, A23K, A23L, A23N, A23P, A24B, A24C, A24D, A24F, C11B, C11C, C12C, C12F, C12G, C12H, C12J, C12L, C12P, C13B, C13K, C12Q(1/00-1/66, 3/00)	A01B, A01C, A01D, A01F, A01G, A01H, A01J, A01K, A01L, A01M, A21B, A21C, A21D, A22B, A22C, A23B, A23C, A23D, A23F, A23G, A23J, A23K, A23L, A23N, A23P, A24B, A24C, A24D, A24F, C11B, C11C, C12C, C12F, C12G, C12H, C12J, C12L, C12P, C13B, C13K, C12Q(1/00-1/66, 3/00)
주거기반심사과	A41B, A41C, A41D, A41F, A46B, A47G, A62B, A62C, D04D, D06N, D07B, E03D, E03F, E04B, E04C, E04D, E04F, E04G, E05B, E05C, E05D, E05F, E05G, E06B, E06C, E99Z, E04H(1/00-7/32, 12/00-17/26)	A41B, A41C, A41D, A41F, A46B, A47G, A62B, A62C, D04D, D06N, D07B, E03D, E03F, E04B, E04C, E04D, E04F, E04G, E05B, E05C, E05D, E05F, E05G, E06B, E06C, E99Z, E04H(1/00-7/32, 12/00-17/268)
가전제품심사과	A47J, A99Z, B42B, B42C, B42D, B42F, B43K, B43L, B43M, B44B, B44C, B44D, B44F, D06F, F24B, F24C, F24H, F24S, F24T, F24V, F25B, F25C, F25D, G03B, G09F, G10B, G10C, G10D, G10F, G10G, G10H, H01S, G10K(1/00-9/22, 13/00-15/12), H01L(33/00-33/64)	A47J, A99Z, B42B, B42C, B42D, B42F, B43K, B43L, B43M, B44B, B44C, B44D, B44F, D06F, F24B, F24C, F24H, F24S, F24T, F24V, F25B, F25C, F25D, G09F, G10B, G10C, G10D, G10F, G10G, G10H, H01S, G03B(1/00-15/0436, 15/0478-15/0484, 15/0494-43/02), G10K(1/00-9/22, 13/00-15/12), H01L(33/00-33/648)

□ 융복합기술심사국

부서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인공지능빅데이터 심사과	G16C, G16Z, G06F(11/00-12/16, 16/00-17/50), G06N(3/00-3/12, 10/00-99/00), G06T(7/00-7/90), G10L(15/00-17/26, 25/00-99/00), H04L(9/00-12/955), H04W(28/00-28/26, 72/00-72/14)	G16C, G16Z, G06F(11/00-12/16, 16/00-19/00), G06N(3/00-3/126, 10/00-99/007), G06T(7/00-7/97), G10L(15/00-17/26, 25/00-99/00), H04L(9/00-12/66, 41/00-51/38), H04W(28/00-28/26, 72/00-72/14)
사물인터넷심사과	H04B(3/00-17/40), H04W(24/00-24/10, 36/00-68/12, 74/00-99/00)	H04B(3/00-17/409), H04W(24/00-24/10, 36/00-68/12, 74/00-99/00)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C12N, G16B, G16H, A61B(1/00-5/22, 34/00-34/37, 90/00-90/98), C12Q(1/68-1/70), G06Q50/22	C12N, G16B, G16H, A61B(1/00-5/7495, 34/00-34/77, 90/00-90/98), C12Q(1/68-1/708), G06F(19/30-19/326, 19/34-19/36), G06Q(50/22-50/24)
지능형로봇심사과	A47L, B23K, B25J, B81B, B81C, G01L, G05B, G05F, G05D(3/00-99/00)	A47L, B23K, B25J, B81B, B81C, G01L, G05B, G05F, G05D(3/00-99/00)
자율주행심사팀	B60W, G01S, G08G, B62D(1/00-15/02), G01C(17/00-25/00), G05D(1/00-1/12), G06Q(50/30A0-50/30B0)	B60W, G01S, G08G, B62D(1/00-15/0295), G01C(17/00-25/005), G01P(9/00-9/04), G05D(1/00-1/12), G06Q(50/30A0-50/30B0)
스마트제조심사팀	B21B, B21C, B21D, B22F, B29B, B29C, B41F, B41G	B21B, B21C, B21D, B22F, B29B, B29C, B41F, B41G, C08J7/08

□ 전기통신기술심사국

부서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전기심사과	B60L, B60M, G21B, G21C, G21D, G21F, G21G, G21H, G21J, G21K, H01B, H01H, H01K, H01R, H01T, H02B, H02G, H02H, H02K, H02M, H02N, H02P, H03B, H03C, H03D, H03F, H03G, H03J, H03L, H05C, H05F, H05H, H99Z, H01F(27/00-38/42), H01J(1/00-37/317, 37/36-99/00), H01L(41/00-43/06), H02J(1/00-5/00, 11/00-50/90)	B60L, B60M, G21B, G21C, G21D, G21F, G21G, G21H, G21J, G21K, H01B, H01H, H01K, H01R, H01T, H02B, H02G, H02H, H02K, H02M, H02N, H02P, H03B, H03C, H03D, H03F, H03G, H03J, H03L, H05C, H05F, H05H, H99Z, H01F(27/00-38/42), H01J(1/00-37/3178, 37/36-99/00), H01L(41/00-43/065), H02J(1/00-5/005, 11/00-50/90)
컴퓨터심사과	G06C, G06D, G06E, G06G, G06J, G06M, G06F(1/00-9/54, 13/00-15/82, 21/00-21/88), G06N(5/00-7/08), G06Q(50/10A0, 50/10C0-50/10D0), G06T(1/00-1/60)	G06C, G06D, G06E, G06G, G06J, G06M, G06F(1/00-9/548, 13/00-15/825, 21/00-21/88), G06N(5/00-7/08), G06Q(50/10A0, 50/10C0-50/10D0), G06T(1/00-1/60)
반도체심사과	G03F(1/00-7/00, 7/12-7/30, 9/00-9/02), H01L(21/00-21/02, 21/0271-21/332, 21/34-21/66, 21/70-23/66, 27/14-27/32), H05K(1/00-3/46, 7/00-7/20, 10/00-11/02)	G03F(1/00-7/0037, 7/12-7/3092, 7/70-9/7096), H01L(21/00-21/02697, 21/033-21/64, 21/70-24/98, 27/14-27/3297, 29/4011-29/40117), H05K(1/00-3/4697, 7/00-7/2099, 10/00-11/02)
통신심사과	H01Q, H03K, H04J, H04K, H04M, H04Q, G06Q(50/10, 50/10B0), H04B(1/00-1/76), H04L(5/00, 7/00-7/10, 13/00-29/14), H04N(21/40-21/858), H04W(4/00-16/32)	H01Q, H03K, H04J, H04K, H04M, H04Q, G06Q(50/10, 50/10B0), H04B(1/00-1/76), H04L(5/00-5/0098, 7/00-7/10, 13/00-29/14, 61/00-69/40), H04N(21/40-21/8586), H04W(4/00-16/32)
디스플레이심사과	G02F, G03D, G03G, G03H, G09G, H05B, G02B(1/00-1/18), G03C(3/00-11/24), H01J(37/32-37/34), H01L(51/00-51/56)	G02F, G03D, G03G, G03H, G09G, H05B, G02B(1/00-1/18), G03C(3/00-11/24), H01J(37/32-37/3497), H01L(51/00-51/56)
전자상거래심사과	G06Q(10/00-50/08, 50/12-50/20, 50/26-99/00, 50/30C0-50/30D0)	G06F19/328, G06Q(10/00-50/08, 50/12-50/2057, 50/26-99/00, 50/30C0-50/30D0)

전자부품심사팀	G06K, G11C, H01C, H01G, H01P, H03H, H03M, H01F(1/00-21/12, 41/00-41/34), H01L(21/027, 21/334-21/339, 25/00-27/13, 29/00-29/96, 35/00-39/24, 43/08-49/02)	G06K, G11C, H01C, H01G, H01P, H03H, H03M, H01F(1/00-21/12, 41/00-41/34), H01L(21/027-21/0279, 25/00-27/13, 28/00-29/401, 29/402-29/945, 35/00-39/2496, 43/08-49/02)
방송미디어심사팀	G08C, G11B, H04H, H04R, H04S, G06T(3/00-5/50, 9/00-19/20), G10L(13/00-13/10, 19/00-21/18), H04L(1/00-1/24, 5/02-5/26), H04N(1/00-21/278, 101/00), H05K9/00	G08C, G11B, H04H, H04R, H04S, G06T(3/00-5/50, 9/00-19/20), G10L(13/00-13/10, 19/00-21/18), H04L(1/00-1/248, 5/02-5/26), H04N(1/00-21/278), H05K(9/00-9/0098)

□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부서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유기화학심사과	A01N, A01P, A61Q, A62D, C07B, C07C, C07F, C07G, C07H, C07J, C08B, C09B, C09F, C09G, C09H, C10M, C10N, C40B, C99Z, D01F, A61K(8/00-8/99), C07D(411/00-521/00), C09D(1/00-9/04, 11/00-11/54, 111/00-119/02)	A01N, A61Q, A62D, C07B, C07C, C07F, C07G, C07H, C07J, C08B, C09B, C09F, C09G, C10M, C40B, C99Z, D01F, A61K(8/00-8/99), C07D(411/00-521/00), C09D(1/00-9/04, 11/00-11/54, 111/00-119/02), C09H(1/00-9/04)
약품화학심사과	A61P, C07K, A61K(6/00-6/10, 9/00-51/12)	A61P, C07K, A61K(6/00-6/10, 9/00-51/1296)
기초재료화학심사과	B28B, B28C, B28D, B82B, B82Y, B99Z, C01B, C01C, C01D, C01F, C01G, C03B, C03C, C04B, C06B, C06C, C06D, C06F, C08J, C09C, C09J, C09K, C10B, C10C, C10F, C10G, C10H, C10J, C10K, C30B, F42C, F42D, C09D(10/00, 13/00-109/10, 121/00-201/10), G03C(1/00-1/95), G03F(7/004-7/115, 7/32-7/42)	B28B, B28C, B28D, B82B, B82Y, B99Z, C01B, C01C, C01D, C01F, C01G, C03B, C03C, C04B, C06B, C06C, C06D, C06F, C09C, C09J, C09K, C10B, C10C, C10F, C10G, C10H, C10J, C10K, C30B, F42C, F42D, C08J(3/00-7/065, 7/12-99/00), C09D(10/00, 13/00-109/10, 121/00-201/10), C09H11/00, G03C(1/00-1/95), G03F(7/004-7/115, 7/32-7/428)
차세대에너지심사과	F21H, F21K, F21L, F21W, F21Y, H01M, H02S, H01L(31/00-31/20), H02J(7/00-9/08)	F21K, H01M, H02S, F21H(1/00-1/02, 3/00-7/00), F21L(2/00-14/04, 17/00-23/00, 26/00-27/00), G03B(15/0442-15/0473, 15/0489), H01L(31/00-31/208), H02J(7/00-9/08)

고분자섬유심사과	A41H, B29D, C08C, C08F, C08G, C08H, C08K, C08L, C14B, C14C, D01B, D01C, D01D, D01G, D01H, D02G, D02H, D02J, D03C, D03D, D03J, D04B, D04C, D04G, D04H, D05B, D05C, D06B, D06C, D06G, D06H, D06J, D06L, D06M, D06P, D06Q, C07D(201/00-409/14)	A41H, B29D, C08C, C08F, C08G, C08H, C08K, C08L, C14B, C14C, D01B, D01C, D01D, D01G, D01H, D02G, D02H, D02J, D03C, D03D, D03J, D04B, D04C, D04G, D04H, D05B, D05C, D06B, D06C, D06G, D06H, D06J, D06L, D06M, D06P, D06Q, C07D(201/00-409/14)
의료기술심사팀	A61C, A61D, A61F, A61G, A61H, A61J, A61L, A61M, A61N, B01L, C12M, H05G, A61B(6/00-18/28, 42/00-50/39)	A61C, A61D, A61F, A61G, A61H, A61J, A61L, A61M, A61N, B01L, C12M, H05G, A61B(6/00-18/28, 42/00-50/39)
환경기술심사팀	B01B, B01J, B02B, B03C, B05B, B06B, B07C, B08B, B09B, B09C, B65F, C02F, C05B, C05C, C05D, C05F, C05G, C10L, C11D, F23G, F23J, F25J, F26B, G01T, B01D(1/00-15/42, 45/00-71/82), E01F(8/00-8/02)	B01B, B01J, B02B, B03C, B05B, B06B, B07C, B08B, B09B, B09C, B65F, C02F, C05B, C05C, C05D, C05F, C05G, C10L, C11D, F23G, F23J, F25J, F26B, G01T, B01D(1/00-15/42, 45/00-71/82), E01F(8/00-8/028), G01N(30/48-30/482)

□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부서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일반기계심사과	A43D, A46D, B31B, B31F, B65C, B67B, B67C, F16B, F16C, F16D, F16F, F16G, F16M, F16T, F17B, F17C, F17D, G01K, G01M, G01P, G01V, G01W, G02C, G04B, G04C, G04D, G04F, G04G, B65D(1/00-83/76, 85/02-90/66), F16K(31/11, 31/64-31/72), G02B(3/00-27/64)	A43D, A46D, B31B, B31F, B65C, B67B, B67C, F16B, F16C, F16D, F16F, F16G, F16M, F16T, F17B, F17C, F17D, G01K, G01M, G01V, G01W, G02C, G04B, G04C, G04D, G04F, G04G, B61D(5/04, 5/08), B65D(1/00-83/759, 85/02-85/52, 85/544-85/68, 85/72-90/66), G01P(1/00-7/00, 11/00-21/025), G02B(3/00-6/00, 6/02-27/648)

제어기계심사과	B05C, B05D, B21F, B21G, B21H, B21J, B21K, B21L, B23B, B23C, B23D, B23F, B23G, B23H, B23P, B23Q, B24B, B24C, B24D, B25B, B25C, B25D, B25F, B25G, B25H, B26B, B26D, B26F, B27B, B27C, B27D, B27F, B27G, B27H, B27J, B27K, B27L, B27M, B27N, B30B, B65B, B65H, B67D, F16S, G07B, G07C, G07D, G07F, G07G, G08B, G09B, G09C, G09D, B65G(21/00-39/20, 47/60-47/69, 49/00-49/08, 57/00-69/34)	B05C, B05D, B21F, B21G, B21H, B21J, B21K, B21L, B23B, B23C, B23D, B23F, B23G, B23H, B23P, B23Q, B24B, B24C, B24D, B25B, B25C, B25D, B25F, B25G, B25H, B26B, B26D, B26F, B27B, B27C, B27D, B27F, B27G, B27H, B27J, B27K, B27L, B27M, B27N, B30B, B65B, B65H, B67D, F16S, G07B, G07C, G07D, G07F, G07G, G08B, G09B, G09C, G09D, B65G(21/00-39/20, 47/60-47/69, 49/00-49/085, 57/00-69/30)
건설기술심사과	B01F, B02C, B03B, B03D, B04B, B04C, B07B, E01B, E01C, E01D, E01H, E02B, E02C, E02D, E02F, E03B, E03C, E21B, E21C, E21D, E21F, F22B, F22D, F22G, F23B, F23C, F23D, F23H, F23K, F23L, F23M, F23N, F23Q, F24D, F24F, B01D(17/00-43/00), E01F(1/00-7/06, 9/00-15/14), E04H(9/00-9/16), F04F10/00	B01F, B02C, B03B, B03D, B04B, B04C, B07B, E01B, E01C, E01D, E01H, E02B, E02C, E02F, E03B, E03C, E21B, E21C, E21D, E21F, F22B, F22D, F22G, F23B, F23C, F23D, F23H, F23K, F23L, F23M, F23N, F23Q, F24D, F24F, B01D(17/00-43/00), E01F(1/00-7/06, 9/00-15/148), E02D(1/00-29/077, 29/10-37/00), E04H(9/00-9/16), E02D29/08
자동차심사과	B60B, B60C, B60D, B60F, B60G, B60H, B60J, B60K, B60N, B60P, B60Q, B60R, B60S, B60T, B60V, F01N, F16J, F21S, F21V, G05G, B62D(17/00-67/00), B65D85/00, F16H(1/00-59/78)	B60B, B60C, B60D, B60F, B60G, B60H, B60J, B60K, B60N, B60P, B60Q, B60R, B60S, B60T, B60V, F01N, F16J, F21S, F21V, G05G, B62D(17/00-67/00), B63C9/24, B65D(85/00, 85/54-85/542, 85/70), F16H(1/00-59/78), F21H1/04, F21L(15/00-15/14, 25/00), G02B(6/0001-6/0096)
동력기술심사과	B22C, B22D, F01B, F01C, F01D, F01K, F01L, F01M, F01P, F02B, F02C, F02D, F02F, F02G, F02K, F02M, F02N, F02P, F03B, F03C, F03D, F03G, F03H, F04B, F04C, F04D, F04F, F15B, F15C, F15D, F16L, F16N, F16P, F23R, F28B, F28C, F28D, F28F, F28G, F99Z, F16H(61/00-63/50), F16K(1/00-31/10, 31/12-31/62, 33/00-99/00)	B22C, B22D, F01B, F01C, F01D, F01K, F01L, F01M, F01P, F02B, F02C, F02D, F02F, F02G, F02K, F02M, F02N, F02P, F03B, F03C, F03D, F03G, F03H, F04B, F04C, F04D, F04F, F15B, F15C, F15D, F16K, F16L, F16N, F16P, F23R, F28B, F28C, F28D, F28F, F28G, F99Z, F16H(61/00-63/502)

운송기계심사과	B61B, B61C, B61D, B61F, B61G, B61H, B61J, B61K, B61L, B62B, B62C, B62H, B62J, B62K, B62L, B62M, B63B, B63C, B63G, B63H, B63J, B64B, B64C, B64D, B64F, B64G, B66B, B66C, B66D, B66F, F41A, F41B, F41C, F41F, F41G, F41H, F41J, F42B, B65G(1/00-19/30, 41/00-47/58, 47/70-47/96, 51/00-54/02), F02K1/34 H01L(21/67-21/687)	B61B, B61C, B61F, B61G, B61H, B61J, B61K, B61L, B62B, B62C, B62H, B62J, B62K, B62L, B62M, B63B, B63G, B63H, B63J, B64B, B64C, B64D, B64F, B64G, B66B, B66C, B66D, B66F, F41A, F41B, F41C, F41F, F41G, F41H, F41J, F42B, B61D(1/00-5/02, 5/06, 7/00-49/00), B63C(1/00-9/23, 9/26-15/00), B65G(1/00-19/306, 41/00-47/58, 47/70-47/967, 51/00-54/025), H01L(21/67-21/68792)
계측기술심사팀	G01B, G01D, G01F, G01G, G01H, G01J, G01N, G01Q, G01R, G04R, G12B, G99Z, G01C(1/00-15/14)	G01B, G01D, G01F, G01G, G01H, G01J, G01Q, G01R, G04R, G12B, G99Z, G01C(1/00-15/14), G01N(1/00-30/468, 30/50-37/005)
재료금속심사팀	B31C, B31D, B32B, B41B, B41C, B41D, B41J, B41K, B41L, B41M, B41N, C21B, C21C, C21D, C22B, C22C, C22F, C23C, C23D, C23F, C23G, C25B, C25C, C25D, C25F, D21B, D21C, D21D, D21F, D21G, D21H, D21J, D99Z, F27B, F27D, H05K(5/00-5/06, 13/00-13/08)	B31C, B31D, B32B, B41B, B41C, B41D, B41J, B41K, B41L, B41M, B41N, C21B, C21C, C21D, C22B, C22C, C22F, C23C, C23D, C23F, C23G, C25B, C25C, C25D, C25F, D21B, D21C, D21D, D21F, D21G, D21H, D21J, D99Z, F27B, F27D, H05K(5/00-5/069, 13/00-13/089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심사품질진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생활가전심사과장, 가공시스템심사과장, 응용소재심사과장”을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전기심사과장, 유기화학심사과장, 일반기계심사과장”으로 한다.

② (특허청) 예산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4인”을 “15인”으로, “16”을 “1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을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으로 한다.

③ 특허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6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제3항 전단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⑤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송무팀”을 각각 “송무과”로 한다.

⑥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송무팀”을 “송무과”로 한다.

별표 1의 정책행정 지원군(33개 부서)의 부서란 중 “송무팀”을 “송무과”로 하고, 같은 표 심사군(40개 부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군 (42개 부서)	생활용품상표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	--

별표 4의 특허심사의 관련 부서란 중 “특허심사1국, 특허 심사2국, 특허

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표 심판의 관련 부서란 중 “송무팀”을 “송무과”로 한다.

⑦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각각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⑧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⑨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제상표출원심사팀”을 “국제상표심사팀”으로 한다.

⑩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을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으로 한다.

⑪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상표디자인심사국장·특허심사기획국장·특허심사1국장·특허심사2국장·특허심사3국장”을 “상표디자인심사국장·특허심사기획

국장·융복합기술심사국장·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으로 한다.

⑫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실심사과”라 함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실심사국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측정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을 말한다.

⑬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⑭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특허심사국 주무과장 4명”을 “특허심사국 주무과장 5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제1호 중 “특허심사1국장”을 “융복합기술심사국장”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특허심사2국장”을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특허심사3국장”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⑮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⑯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허심사1국·특허심사2국·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